

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4. 8.

제안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시장사무중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결정 허가 및 해제를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위임 받아 처리해왔으나,
- 동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결정 허가 및 해제 사무를 시장이 관장해야하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 및 민원 편의 행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 코자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지금까지 시장이 처리(내부위임 규정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처리)하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허가 및 입주해제 사무를 계속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처리토록 함
-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"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"에서 "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"으로 입주대상 확대

□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.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
- .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노동부 지침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(관리) 중 "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"을 "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(이하 관장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 4조(입주대상자)제1항중 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"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"을 "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"으로 한다.

제 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중 "시장"을 "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현 행
제 3조 (관리)① 임대아파트는 <u>안산시</u> <u>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</u> 이를 관리한 다.----- -----.	제 3조 (관리)① 임대아파트는 <u>안산시</u> <u>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(이하 관장이라</u> 한다.)이 이를 관리한다.----- -----.
제 4조 (입주대상자)①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<u>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</u> <u>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</u> 한다. 다만, <u>시장이 특별한 사유가</u>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로 할 수 있다.	제 4조 (입주대상자)①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<u>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</u> <u>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.</u> 다만, <u>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</u>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로 할 수 있다.
제 5조 (입주허가) 임대아파트에 입주 하고자 하는 자는 <u>시장의 입주허가를</u> 받아야 한다.	제 5조 (입주허가) 임대아파트에 입주 하고자 하는 자는 <u>관장의 입주허가를</u> 받아야 한다.
제 6조 (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불)② 이 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 니 한다. 다만, <u>시장이 특별한 사유</u>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 한다.	제 6조 (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불)② 이 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 니 한다. 다만, <u>관장이 특별한 사유</u>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 한다.

신 .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현 행
<p>제 7조 (입주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를 제한할수 있다.</p> <p>제1호 ~ 제5호 (생략)</p> <p>제 8조 (입주허가 취소)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제 1호 ~ 제 9호 (생략)</p>	<p>제 7조 (입주허가 제한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를 제한할수 있다.</p> <p>제1호 ~ 제5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조 (입주허가 취소)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제 1호 ~ 제 9호 (현행과 같음)</p>